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인사”란 정관 제31조의 교원, 정관 제36조제1항의 직원, 정관 제40조의 조교, 정관 제41조의 학생을 말한다.
2. “외부인사”란 내부인사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총장후보대상자”란 총장추천위원회가 공모, 추천, 초빙 등의 절차를 거쳐 제14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총장예비후보자”란 총장후보대상자 중 총장추천위원회가 우선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총장후보자”란 총장예비후보자 중 총장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선정한 3명의 후보자를 말한다.

제2장 총장추천위원회

제3조(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현 총장의 임기만료 5개월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외부인사 5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 2명과 내부인사 1명
2.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 3명과 내부인사 9명

③ 이사회와 평의원회는 총장 임기만료일로부터 5개월 15일 전까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하고, 총장은 추천받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지체 없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궐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이사회와 평의원회는 지체 없이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직무대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기한까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이 추천되지 않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사장은 이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자 추천하여야 한다.

⑤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총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대통령이 신임 총장을 임명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장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제4조(총장추천위원회의 기능) 총장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총장후보대상자의 자격기준 설정
2. 공모, 추천, 초빙 등을 통한 총장후보대상자의 모집 및 확정
3. 총장후보대상자 적격 여부 심사
4.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면접, 토론회 등의 개최, 정책평가 등의 실시
5.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6. 총장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7. 총장후보자 추천 및 총장 선출에 관한 백서 발간
8. 그 밖의 총장후보자의 추천에 관련된 제반 업무

제5조(총장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의 임기만료일 5개월 전에 총장이 최초로 소집하며 대통령이 신임 총장을 임명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총장이 궐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장추천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총장추천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총장추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총장추천위원회 운영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총장후보대상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4. 제2호 또는 제3호에 상응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외국인

②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결격사유 발생일로부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은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각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총장후보대상자가 된 때에는 의결 등 관련 절차에서 제척된다. 위원회는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척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총장후보대상자는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장추천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추천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총장후보대상자에 대한 의결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교체되지 아니 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제9조 또는 제10조에 위반하는 경우
4. 현저히 불공정한 업무수행을 한 경우 및 불공정한 언행으로 논란을

야기한 경우

5. 제3조 제5항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가 해산을 의결한 경우

③ 총장은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이 해임·해촉되거나 제3조 제5항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가 해산된 경우,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추천하고 총장은 추천받은 위원을 지체 없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 및 행동강령 준수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심사했거나 심사하고 있는 후보의 개인정보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의 총장추천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2. 제20조에 정한 총장선출행정지원단의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

②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표 1의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총장선출행정지원단의 교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총장선출행정지원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총장후보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총장후보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총장후보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총장추천위원회가 심사를 진행 중인 때에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선정과정에 있어 총장후보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총장후보자의 모집

제11조(총장후보자 모집공고 등) ①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최초로 소집된 후 15일 이내 총장후보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받을 수 있다.

③ 총장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2,000만원의 기탁금을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총장후보자 추천 이후 2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 집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탁금 전액

2. 총장예비후보자가 정책평가단 정책평가 결과 총점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 전액

3. 총장예비후보자가 정책평가단 정책평가 결과 총점의 15% 이상 20% 미만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⑤ 총장후보대상자가 총장예비후보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 기탁금은 기탁자의 명의로 인천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기탁자의 명의로 인천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한다.

⑦ 총장후보자 모집공고, 자격요건 및 추천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총장후보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① 총장후보자는 인천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적합한 인품과 학식, 덕망, 대학 발전의 비전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사로 한다.

② 총장후보자는 내부인사와 외부인사를 불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장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3.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외국인

제13조(총장후보초빙위원회)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의 초빙을 위하여 총장추천위원회 내에 총장후보초빙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9명의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의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총장후보초빙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총장후보자 모집공고 이후 1개월 이내에 초빙절차를 완료하여 총장추천위원회에 총장후보대상자 외부인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⑥ 총장후보초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4장 총장후보자의 추천

제14조(총장후보대상자의 확정)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제11조에 의하여 모집된 사람에 대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총장후보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총장후보대상자의 명단 확정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등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총장예비후보자의 선정)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대상자에 대하여 인천대학교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및 동문을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른 총장예비후보자 선정을 위한 정책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정책평가는 1인 1표제로 실시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 총장추천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7명의 총장예비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총장후보초빙위원회에서 초빙한 사람은 이에 포함한다.

④ 총장초빙위원회에서 초빙한 사람을 포함하여 총장후보대상자의 수가 7명 이내일 경우에는 총장예비후보자 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선정방식과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6조(총장추천위원회 검증소위원회)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대상자와 총장예비후보자의 검증을 위하여 총장추천위원회 검증소위원회(이하 “검증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총장후보대상자와 총장예비후보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명예와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증소위원회는 총장후보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1. 총장후보지원자 공모결과 제출서류 구비여부에 관한 사항
2. 학력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검증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검증소위원회는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1. 상벌에 관한 사항
2. 경력 및 자료의 진위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등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위반에 관한 사항

⑤ 총장후보대상자와 총장예비후보자의 검증 내용과 방식,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7조(검증절차)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검증을 위하여 총장후보대상자와 총장예비후보자에게 질문서를 보낼 수 있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장후보대상자와 총장예비후보자의 소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총장후보대상자와 총장예비후보자·참고인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대상자와 총장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해 대학구성원에게 제보기간을 정하여 실명제보를 요청할 수 있고, 정책토론회나 합동연설회에서 제보기간 동안 접수된 내용에 대한 총장예비후보자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검증 사항 중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감정인의 감정 또는 관련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보고서의 최종 채택 여부는 총장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총장예비후보자 및 검증 결과 총장후보자로 선정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총장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자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정책평가 등)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인천대학교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및 동문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와 별표 2에 따른 정책평가(이하 “정책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정책평가는 1인 1표제로 실시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에 의할 수 있다.
- ③ 총장추천위원회는 정책평가의 모든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및 정책평가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9조(총장후보자의 추천)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정책평가 결과에 따라 3명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한다.

-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 임기만료 2개월 15일 전까지 3명의 총장후보자를 제18조 정책평가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를 추천하기까지의 활동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작성하여 총장 선출 이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3항의 활동결과 등을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총장선출행정지원단) ① 총장추천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구로 총장추천위원회 소속으로 총장선출행정지원단을 둔다.

- ② 총장은 임기만료일 6개월 전까지 총장선출행정지원단을 구성하며, 총장선출행정지원단은 차기 총장의 임기 개시일까지 존속한다.
- ③ 총장선출행정지원단에 단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두되, 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1조(회의록) ① 총장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 2명이 기명·날인한다.

-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제반경비지원)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 총장후보초빙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 및 그밖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세부사항)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 ② 이 규정 및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95호, 2020.10.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대 총장 선출 업무 수행에 관한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행동강령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인천대학교 제 대 총장 선출에 관한 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법률, 정관, 규정 등에 명시된 각종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2. 총장 추천 및 선출에 이르는 과정에서 총장후보대상자·총장예비후보자·총장후보자 또는 그와 동일시되는 제3자가 총장 추천 및 선출에 관하여 개별 방문, 면담, 모임의 주최 등의 방법으로 접촉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거절 또는 회피한다.
3. 총장후보대상자·총장예비후보자·총장후보자 또는 그와 동일시되는 제3자로부터 총장 추천 및 선출에 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그 밖의 보직에 관한 약속을 포함한 일체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거나 이를 약속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총장 추천 및 선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하여 특정한 총장후보대상자·총장예비후보자·총장후보자의 평가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하거나 지지를 중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총장 추천 및 선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총장 추천 및 선출 업무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자제하고, 총장 추천 및 선출 업무에 관한 총장추천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한다.

[별표 2] 정책평가단 구성(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성방식	반영비율	제15조 제1항 구성인원	제18조 제1항 구성인원
교원	※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구성 · 기준일 현재 휴직자, 정직중인 자, 직위해제 중인 자를 제외함. · 기준일 이후 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함. · 정책평가일 전에 복직, 정직기간만료, 직위해제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제외함.	70%	150명	전체 구성원
직원		14%	30명	
조교		6%	13명	
학생	※ 학생 정책평가단으로 사전 등록된 학생으로 구성 · 기준일 현재 재학 중인자로 하고 수료생, 휴학생, 정학생 및 교환학생(타 대학 소속)을 제외함. · 기준일 이후 휴학, 정학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외함. · 정책평가일 전에 복학, 정학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제외함.	9%	19명	사전 등록자
동문	※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	1%	2명	9명
합 계		100%	214명	

1. 교원은 전임교원(연구중점교원 제외)에 한하며, 산정 기준일자는 총장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정함
2. 직원은 법인직원에 한하며, 산정 기준일자는 총장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정함
3. 학생 정책평가단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모두 포함하며, 산정 기준일자는 총장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정함

서 약 서

본인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제 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천대학교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총장으로
추천하는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관련 법률, 정관, 규정,
지침 등 관련 법규,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행동강령과
총장추천위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단, 내부위원(교수)은 차기 총장 집행부 구성 시 2년간 교육연구
위원급의 임명제 보직을 말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다만, 선거에 의한
집행부 보직은 제외한다.]

20 . . .

위 서약자

총장추천위원회위원 성명 : (서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 귀중

서 약 서

본인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제 대 총장선출행정지원단
종사자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천대학교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총장으로
추천하는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총장선출행정지원단 종사자로 활동하는 동안 관련 법률, 정관,
규정, 지침 등 관련 법규와 총장추천위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20 . . .

위 서약자

총장선출행정지원단 성명 : (서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 귀중